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5회 제2차 정례회

# 검토 보고서

2023. 11. 28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  
[전문위원 장홍용]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”

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11. 17.
- 회부일 : 2023. 11. 20. (의안번호 : 23-166)

## 2. 제안이유

- 마포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 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재단의 사업범위 확대(제3조)
  -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신설
  -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관리 추가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마포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  - 안 제3조 제1호 중 “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”을 복지 자원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”을 신설하며
  - 같은 조 제6호 중 “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”를 “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”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  
-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타당성  
 지역사회 복지 수요의 증가 및 「사회보장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사업 증가로 인하여 효과적인 운영·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의 개정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주민생활 복지과	신희선 (8810)	이민영 (863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마포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박선하 (☎ 3153-8833)

## 참고 자료

### 1. 마포복지재단 운영현황

#### ○ 사업(설립)근거

- 민법 제32조 /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# ○ 추진경위

- '20. 2. 21.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
- '21. 9. 8. 마포복지재단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개최
- '21. 9. 마포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(서울시 복지정책과)

#### ○ 설립형태 : 마포구출연기관, 비영리 재단법인, 공익법인

#### ○ 설립허가 : 2021. 11. 2.(대표자: 이홍주)

#### ○ 운영재원 : 구 출연금, 이자수입, 후원금, 기타

#### ○ 기본재산 출연목표: 50억원

- 현 기본재산 : 총35억원(21년도 20억원, 22년도 5억원, 23년도 10억원)

#### ○ 조직·인력 : 이사회(이사17명), 감사(2명), 사무국(2개팀 7명)

#### ○ 주요사업

-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
-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 구축 및 운영
-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
- 효도밥상 후원금(품) 모집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
- 위수탁운영(푸드마켓,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)